

다.
넷째,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배부기준 개선실시를 촉구하기 위하여

- ①지방재정분야
- ②지방조직인사제도분야
- ③지방공기업분야

에 관하여 지방자치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발전 국가경쟁력 강화에 지방자치가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한지방자치발전과지방재정확충을위한제도개선에관한건의안을 제안하였사오니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柳德烈 다음은 專門委員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安錫洙 專門委員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報告)

바람직한지방자치발전과재정확충을위한
제도개선에관한건의안 검토보고

- 동 건의안은 1991년 지방의회 재구성과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출범으로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각종 법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상 계약으로 지방자치권한인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등이 침해를 받고 있으므로 지방자치제도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각종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것임.
- 우리 의회에서는 운영위원회, 재무경제위원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등에서 심도 깊게 심의되고 또한 건의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동 건의안에 포함된 상당부분 즉, 지방자치발전과 의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법과 지방양여금법 등 개정, 지

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조직 개편,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지방의회 의장의 인사권 독립 등 각종 건의안을 채택하여 중앙정부, 국회 등 관계기관에 건의한 바 있고, 또한 동 건의안의 주요사항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음.

- 우리 의회와 각 지방의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각종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을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이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동 건의안을 국회,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에 재차 건의하는 것은 각종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겠음.
- 다만, 동 건의안의 일부내용이 중복된 부분도 있고 문서 항목 기호도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정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건의 내용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조정 및 자구수정을 할 권한을 위원장께 위임할 여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柳德烈 그러면 동 건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根委員님.
 - 崔鍾根委員 지금 專門委員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과 같이 委員長께 위임해서 중복된 사항과 문구 수정 등등을 하도록 하는 專門委員 검토의견과 같이 동의합니다. 위원장님께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 委員長 柳德烈 趙相勳委員님 말씀하십시오.
 - 趙相勳委員 지금 이 건의안을 마련하신 文龍子 同僚委員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데요, 사실 그 내용으로 봐서 굉장히 반대하고, 또 지금까지 우리 議會에서 제출했던 다양한 건의안에 비해서는 훨씬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우선 감사드리고, 또 우리 위원회로서는 존경을 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렇지만 지금까지 개별사안, 구체적이고

다.
넷째,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배부기준 개선실시를 촉구하기 위하여

- ①지방재정분야
- ②지방조직인사제도분야
- ③지방공기업분야

에 관하여 지방자치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발전 국가경쟁력 강화에 지방자치가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한지방자치발전과지방재정확충을위한제도개선에관한건의안을 제안하였사오니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柳德烈 다음은 專門委員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安錫洙 專門委員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報告)

바람직한지방자치발전과재정확충을위한 제도개선에관한건의안 검토보고

- 동 건의안은 1991년 지방의회 재구성파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출범으로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각종 법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상 제약으로 지방자치권한인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등이 침해를 받고 있으므로 지방자치제도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각종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것임.
- 우리 의회에서는 운영위원회, 재무경제위원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등에서 심도 깊게 심의되고 또한 건의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동 건의안에 포함된 상당부분 즉, 지방자치발전과 의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법과 지방양여금법 등 개정, 지

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조직 개편,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지방의회 의장의 인사권 독립 등 각종 건의안을 채택하여 중앙정부, 국회 등 관계기관에 건의한 바 있고, 또한 동 건의안의 주요사항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음.

- 우리 의회와 각 지방의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각종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을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이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동 건의안을 국회,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에 재차 건의하는 것은 각종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겠음.
- 다만, 동 건의안의 일부내용이 중복된 부분도 있고 문서 항목 기호도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정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건의 내용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조정 및 자구수정을 할 권한을 위원장께 위임할 여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柳德烈 그러면 동 건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根委員님.
- 崔鍾根委員 지금 專門委員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과 같이 委員長께 위임해서 중복된 사항과 문구 수정 등등을 하도록 하는 專門委員 검토의견과 같이 동의합니다. 위원장님께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 委員長 柳德烈 趙相勳委員님 말씀하십시오.
- 趙相勳委員 지금 이 건의안을 마련하신 文龍子 同僚委員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데요, 사실 그 내용으로 봐서 굉장히 방대하고, 또 지금까지 우리 議會에서 제출했던 다양한 건의안에 비해서는 훨씬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우선 감사드리고, 또 우리 위원회로서는 존경을 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개별사안, 구체적이고